

연구논문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변 준 영 *

〈목 차〉

- I. 서 론
- 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 III. 수입업자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유의사항
- IV. 수입 실무상의 일반적인 해결책
- V. 결 론

* 대한상사중재원

I. 서 론

제조물책임(PL¹⁾)법이 2002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내에 전담팀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처하여야 한다는 의식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예를 보면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사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단순히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무역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매우 드문 형편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의 범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단순기능정지나 오동작의 애프터서비스에서 벗어나 그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조자들은 기존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제조물의 하자담보에서 결합담보로, 소비자의 입증책임에서 제조자의 입증책임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수입업자도 제조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입자의 책임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출자들은 제조원가상승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업자가 제조, 수출 또는 수입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무역업

1) 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현재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약 30여개 국가가 넘는다.

체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은 종전의 민사책임보다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는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나 무역업체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에서 수입업자들에게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유의사항과 해결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제조물책임분쟁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대비하거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방법들을 알려 주고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동법의 문제점들도 몇 가지 서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를 통해 수입업자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유형에 맞는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각 유형별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수입 실무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해결책들도 상세히 열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²⁾과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EU³⁾, 우리나라와 법

2)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근거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발생되어 온 것이나 실제 소송에서는 소장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구분하자면, 1960

내용이 가장 유사한 일본⁴⁾의 동법들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년대까지를 제1기로서 ‘엄격책임법의 확립기’로 표현하고,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제2기로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를 작성한 ‘엄격책임법의 전성기’라고 부르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제3차 리스트레이트먼트가 채택된 ‘엄격책임법의 전환기’로 규정할 수 있겠다.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트레이트먼트는 선진적 제조물책임법리의 상징적 존재로서 미국 판례·학설의 발전을 유도하였으나,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는 제한된 엄격책임의 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3) EU는 1970년대에 들어와 EC를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검토를 시작하였고, 영국이 EC에 가입한 후 그 검토가 한층 더 진전되었고 이것이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지침’으로 22개 조항에 의하여 결실을 맺었다. 이 지침은 전문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과실책임에 대신하여 결합책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EC 각국의 실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는 성문법 국가이면서 판례에 의하여 그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서독은 과실책임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구제를 기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결국 이러한 가맹국 간의 차이는 제조업자의 경쟁조건에서 차이를 낳게 되어 공동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물적 유통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와 동시에 공동체 시장의 경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제조물책임법의 실시를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초로서는 가장 현대적인 사상인 결합책임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1960년대의 식품·의약품 관련 대형사고, 1970년대의 산업발전에 따른 빈번한 사고를 경험함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1975년에 최초로 제조물책임법안이 발표되었다.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으로서 정부부처 9개 기관이 관계하여 의견을 조정하면서 작업을 추진하여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하였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균형을 갖춘 법률로 탄생할 수 있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위한 종합정책의 하나로 입법된 법률로서 제조물의 결합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큰 의의는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책임요건을 이제까지의 제조업자 등의 ‘과실’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변경한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일본에서는 ‘결합책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시행 7주년을 맞아 소비자관련단체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한 수정안이 발표되는 등 소비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

에서 발생할 분쟁을 예측하여 서술하였음을 미리 말해 둔다.

II.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정배경 및 목적

(1) 제정배경

제조물책임법 이론은 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약자로서 노출된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한 이론이다. 현재의 제품은 국경이 없는 무국적 내지는 다국적 제품으로서 우리의 수출제품이 어느 나라의 소비자에게 애용될지, 또 외국의 어느 제품이 우리에게 제공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국가에 유통가능성이 있기에 그 국가의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제품도 유형물에서 무형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제3의 산업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상정한다면 이번에 제정된 우리의 입법이 조금은 시대에 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

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특성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른 국가의 제조물책임법과는 달리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단순하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추정규정이나 기업측의 정보개시규정을 일체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산업계 입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일본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사실상의 추정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피해자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법 자체에 우선은 반기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의원입법 발의⁵⁾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입법논의가 있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국가의 산업보호정책으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제정시기가 OECD의 국가에 비해 다소 늦었으나, 1999년 12월 동법을 제정⁶⁾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⁷⁾

(2) 목적

이 법의 제1차 목적은 손해배상책임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제품의 결함에 의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말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여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이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것을 제2차 목적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의 범위의 문제로서 소비자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개념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제품을 직접 사용, 소비하고 있지 않은 제3자라도 해당 제품의 결함에 의거 손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⁹⁾된다.

5) 1982. 2. 19. 김순규의원 외 25인이 제조물책임법안을 의안번호 231호로 의원입법발의를 한 것이 최초로서 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6) 의원입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7) 이학승, 제조물책임법과 수입업자의 책임, 무역상학회지, 2002, pp.241-242.

8)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 기업과 소비자 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9) 이를 위해 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이익의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탄생한 입법이지만, 법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섬의 게임의 원리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정의보다 법적 효율성이 중시되어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으며, 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양자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내용

(1) 제조물¹⁰⁾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조물의 대상이 유체물·무체물을 불문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전기, 음향, 광선 등 무형의 에너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고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단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품특성 및 생산·유통과정이 공산품과 다른 점,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대부분 제조물 책임법과는 관계없는 기능상의 하자인 점, 아파트 이외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조물(엘리베이트,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등의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조물로 보기 어렵다고 생

10) 제조물의 범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강동근·윤종성의 제조물책임법 (가림M&B, 2002, pp.85-98) 참조.

각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조립된 제조물은 적용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제조라는 것은 제품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의 위치가 부여되어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가공이 이루어져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산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소위 제2차 산업에 관계된 생산행위를 가리키고, 일차상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공이라는 것은 동산을 재료로서 이것에 공작을 가해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해서 가치를 첨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연의 산물, 즉 미가공된 농산물은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은 개별적으로 당해 제조물에 추가된 행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함과 무과실책임

1) 결함

결함이라는 것은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에 관계된 사정을 고려해서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결함은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함을 나타낸 개념이고, 광의의 하자에 포함되지만, 안정성과 무관한 품질이나 성능의 하자는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는 결함으로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성을 잃게 되는 경우¹¹⁾로서 결함이 발생한 과정·원인을 묻지 않고 그 제조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에의 배려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¹²⁾로서 그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조자의 내부적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위험·효용 기준이 가장 보편적)이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제조물에 상식을 초월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은 설계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당연 설계변경을 하거나 경고를 표시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판은 하지 않으리라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에 적절한 취급설명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 및 위험의 회피방법의 지시 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로서, 그 구별에 있어 경고는 제품이 잘못된 사용을 한 경우의 위험성과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이고, 지시는 이용자에게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하에서는 엄격한 제조·설계기준을 만족한 제조물이라도 경고나 지시가 불충분할 경우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11) 구체적으로 예로서는,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12) 구체적인 예로서는,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있다.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오용결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명확한 경고·지시가 있으면 제품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당해 제조물에 관계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위험의 명확성, 제품이외의 상황,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과실책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불법행위법이론이 수정된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인적 손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 그 손해가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나 비재산적 손해가 모두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조물 책임에서도 인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물적 손해는 인적 손해 이외에 물건에 생긴 손해, 즉 물적 손해도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대하여만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책임주체

책임주체는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또는 오인표시제조업자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

함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제조물을 유통을 한 자(제조, 가공을 업으로 한 자)를 책임주체로 하는데, '업으로서'라는 것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사로 표시하는 자 또는 제조사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 자신이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한 자 또는 명확하게 이것과 오인하게끔 하는 표시를 한 자는 책임주체가 된다. 즉 '제조원○○', '수입원○○'로 표시된 경우와 특히 서명, 자기의 성명, 상표 등을 부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이다.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해서 결함의 발생에 직접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조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에 위험을 불러일으킨 자라는 것, 소비자가 직접 해외의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 법에서는 제조사와 동일하게 책임주체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자(유통업자)이다. '공급원○○', '판매원○○' 등의 표시와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 당해 표시자가 제조물의 제조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된다던가,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¹³⁾

13)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해당쇼핑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지원뉴스, 2002년 7월 3일)

(4) 기타 주요내용

1) 연대책임

제5조에서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연대책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책임관여자¹⁴⁾가 있을 경우에 구성하는 책임원리로서 제조물책임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피해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와 함께 배상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임이 분명하다.

2) 면책사유

다음의 4가지의 경우에 제조업자가 면책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 ①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제조물을 유통시킨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예컨대 창고에 보관중인 제조물을 도난당하여 유통된 후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이다. “개발위험”이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¹⁵⁾으로는

14)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결함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제조물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결함제조물이 되는 위험을 가리킨다. 제조자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 제조물 책임을 개발위험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 개발위험에까지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저해하게 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법령기준준수의 항변)이다. 제조물의 기술의 원리에 따라서 혹은 행정상의 인가·허가를 얻어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법적 강제기준이 있고, 그 강제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에 만일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여 생긴 때에는 제조자는 면책된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항변)이다. 부품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진다. 다만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

15)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 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의 설계나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부품제조자는 면책된다. 또 이러한 항변에 의해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는 예견가능성 또는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등 결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자의 동기부여의 확보와 현명한 소비자의 제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면책사유의 존재이유를 파악하여야 제조물책임법이 사고방지법이나 정확한 피해보상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면책특약의 금지

제조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것으로서 면책특약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가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특약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자의 책임면제나 책임의 제한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자의 횡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및 제소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사 등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

멸¹⁶⁾한다. 시효의 중단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하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손해 및 제조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무기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기간은 제적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¹⁷⁾

기간의 경과에 따른 책임의 면제는 제조업자에게 있어서는 제품의 사용기간과 서류의 보존기간 등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이 되며 법적 현실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5) 민법 기타 법률의 적용

본 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민법의 불법행위제조에 대해 결함을 책임 원인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제조의 특칙으로 된다. 본 법은 특단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¹⁸⁾과 민법 이외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16)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7)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인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정영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 법률·경영 가이드, 2002, p.183).

18)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 규정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

하고 있다. 또 본법은 민법에 기초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이들의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¹⁹⁾

III. 수입업자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유의사항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업자의 유형별로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크게 방어책과 해결책으로 구분하면, 방어책이란 예방책²⁰⁾으로서 설계상의 대책, 제조상의 대책, 사용설명서·경고대책, 마케팅상의 대책 등 제품판매전 대책과 리콜대책, A/S대책 등의 제품판매 후 대책이 있고, 분쟁발생 전의 대책인 문서관리대책과 위험분산대책인 보험 등이 있다. 또한 해결책에는 사고발생 후의 대책인 소송과 분쟁해결대책이 있다.

다음에서는 수입업자별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분쟁발생 이전의 대책인 방어책을 유의사항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이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19) 朝岡良平編, “國際商務論 諸問題”, 同文館, 1998.

20)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로 표현하며,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이다.

1. 직수입업자

(1) 개요

외국제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직접 유통시킨 후, 수입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내 수입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분석

국내 유통업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 주체이므로 외국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3) 유의사항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 제조업자의 결함방지를 위한 제품안전대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²¹⁾의 역할은 안전성 확보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조사 등이 의도한 안전한 사용이 가능케 하도록 일반 소비

21) 표지, 일러두기, 안전상의 주의, 목차, 제품설명, 개봉, 설치·조립방법, 보수, 점검, 수리에 대한 내용, 색인, 식별사항, 용어집,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주의, 체크리스트,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자를 지원, 유도함에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설명서 등의 유무나 내용이 제품의 결함판단시 고려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한 중요한 방어책이 되고 있다. 사용설명서가 제품과의 불일치, 필요 정보의 결여, 기술내용의 부적절 혹은 부정확, 과장된 표현 등이 있을 때에는 결함으로 판단될 수 있다.²²⁾

사용설명서의 기능으로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전달하고, 사용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지시, 경고를 전달하며, 보증에 관한 사항과 브랜드명, 형식 등 그 밖의 사항들도 전달한다는 것 등이 있다.

2) 경고 표시

경고란 회피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데, 경고표시는 평균적 사용자(수입국 기준)를 전제로 한 제품의 사용자층을 예상한 후에 이들 사용자의 연령, 지식정도, 성격, 능력 등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제조업자가 의도한 적정한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오사용 형태 까지 감안한 범위에서 위험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작성시에는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우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레이아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고 표시가 구비되어 있어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방법이나 경고를 표시하는 내용, 표현 및 수단은 제품의 종류, 예상되는 사용용도 및 사용자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³⁾

22) 제조물책임관련 표시결합 예방대책, 중소기업청, 2002, pp.177-178.

23) 경고는 최종사용자(end user)에게 도달하지 않고, (아이가)읽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경고라벨의 스페이스나 내구성, 사용자의 오해, 지킬 수 없

경고 표시를 하였다 하여 제조물책임이 면책되는 아니며, 경고 표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적용하여 제품의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하며, 기술력의 한계로 결함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의미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EU지침에서는 각 나라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므로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수입하고 있는 업자들은 해당국가의 법령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리콜 대책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 즉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험·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입(제조,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나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제도²⁴⁾이다.

시장에 대량유통제품으로 출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업은 대응을 잘못하면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큰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²⁵⁾, 리콜을 신속히 행하고 사고를 미

고 지키더라도 무의미한 경고가 되는 등의 물리적 한계도 있다.

- 24) 리콜의 운영절차는 결함정보의 수집, 결함여부 평가, 위해사실 고지, 시정 계획 수립, 시정조치 실시, 시정조치 보고의 단계를 거친다.
- 25) 리콜 실시상의 문제점으로는 위해정보 수집 및 원인규명의 어려움,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정부의 품질인증과 형식승인 제도 등이 있다.

연에 방지한 업체는 일시적으로 비용 등에 타격을 받지만 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 문서관리

수입업자는 검사기록(검사양식서, 원·부자재 납품검사기록, 시제품 검사기록, 견본품 검사기록 등), 판매관계서류(고객의 사양서·계약서·승인도면,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고객명부 등), 보수 서비스 기록(보수·수리 기록, A/S 보고서 등),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기업방침, 클레임처리 체제에 관한 자료, 문서관리 규정) 등을 보존하는 문서관리가 필요²⁶⁾할 것이다. 이는 제조물책임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하기에 매우 중요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2. 수입대리업자

(1) 개요

국내제조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수입업자가 국내제조업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외국 제조업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한 제품이 어떤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내수입업자 등이

26) 문서의 관리원칙으로는 문서관리 체제를 확립할 것, 소송대응을 위한 검색 관리 체제를 확립할 것, 변론을 위해 작성된 문서의 해독능력 및 문서간의 통일상을 확립할 것,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기하고 보존하지 말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2) 분석

수입업자가 대리인으로서 수입한 제품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인에게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유사한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요건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에 근거하여 외국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킬 원천공급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국들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3) 유의사항

수입업자는 국내제조업자와 더불어 소비자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제조물책임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제조업자와 계약체결시 협상을 잘하여 전적으로 국내 제조업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특약조항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 국내제조업자가 도산 등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놓을 것이 요구된다.

제조물책임보험²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발생빈도는 적지만 발생한 경우에 큰 손해 지출을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장기 안

27) 반대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28)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PL보험과 PL단체보험이 있다.

정적인 비용지출로 위험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물책임 대책으로서 우수하다. 또한 피보험자인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제조,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소비자 등 제3자가 부상을 입었다든가 사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결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유통시킨 도소매업자

(1) 개요

식품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보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지명도와 경험 부족으로 국내 굴지의 수입업체를 총수입원으로 제품에 표시하고 실제 수입 및 국내 유통은 전적으로 식품수입업자가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의 저명한 수입업체에게는 매출액 몇 %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제품을 수입·유통하였으나 제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서 식품수입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된다.

(2) 분석

식품수입업자가 직접적 제조물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내의 저명한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직접 수입이라는 행위와는 일체 관계가 없음에도 총수입원의 표시를 허락한 만큼 표시제조업자

에 해당되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의사항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을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시제조업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수입업자는 국내 굴지의 수입업체와의 관계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외제조업자에 대한 책임전가 및 구상권 확보의 방안과 국내 피해자의 배상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입업자는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해외제조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에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으로 대처하여 수입업자는 일체의 손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상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에도 실제문제로서 완전하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외제조업자에게 부담능력이 없으면 구상은 실행될 수 없고 제조업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의 재판소에 의한 집행이 필요하게 되고, 경비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유형에서도 언급된 계약서의 특약조항 삽입과 소송 등의 강제성 있는 분쟁유형에 관한 해결책에 관해서는 제2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위탁가공무역업자

(1) 개요

국내제조시장의 경영악화로 제품의 일부를 해외제조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제조업자의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하던 중,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2) 분석

국내제조업자는 직접 사고를 일으킨 제조자는 아니지만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표시제조업자에 해당되고, 국내제조업자가 해외제조업자에 제품의 설계·제조에의 관여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표시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이 아닌 제조업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입업자는 통관상 수입업자로서 형식적 측면으로 당연히 국내제조업사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수입업무대행자로서 국내제조업사와 해외제조업자와의 중재역할만 수행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유의사항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국내제조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필요하고, 해외제조업자와는 수입계약체결시 국내제조업자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5. 판매점

(1) 개요

국내수입업자는 외국제조업자의 국내 총판매대리점으로 상표 전 속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제조업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외국상표를 부착하는 대신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후 제품에 문제점이 나타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국내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2) 분석

국내제조업자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국내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상품 전속권자로 간주되어 ‘표시자’로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저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표에 대한 강한 이미지와 국내수입업자를 연관시켜 생각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표시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판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은 아니기에 향후 관련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유의사항

이 사례의 경우에도 국내수입업자는 국내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 상표 사용허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클레임에 대한 면책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6. 수입대행업자

(1) 개요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외국제조업자와 제휴한 국내수입업자는 자신의 지명도를 감안하여 식품의 포장, 광고 등에 자신을 판매원으로 표시하고, 제조원으로서의 외국제조업자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었다. 판매개시 1년후 식품에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많은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이다.

(2) 분석

국내수입업자는 제조업자로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수입업자’라는 표시만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지명도가 높은 상사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회사명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와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국제조업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²⁹⁾. 즉 직접적 제조와 관련이 없는 수입업자도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식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29) 이러한 사례는 외국제조업자로부터 수입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업자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의사항

국내수입업자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사용자에 대한 주의(경고)표시를 철저히 하고, 외국제조업자의 설계·제조에 대한 안전대책의 확인 및 사고후의 책임의 명확화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7. 부품(원료) 수입업자

(1) 개요

해외의 원료(부품)제조업자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제조업자에게 공급한 국내수입업자는 원료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2) 분석

국내수입업자는 단순히 외국제조업자로부터 원료를 유통만 하였을 뿐, 제조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가공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제조업자와 국내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일 부품(원료)수입업자가 해외의 원료제조업자와 공동으로 원료의 제조에 가담하였거나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시 원료를 가공하였다면,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유의사항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약체결시에 확실한 예방 조항을 명시하거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두는 방법,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수입 실무상의 일반적인 해결책

이상에서 서술한 것은 분쟁의 예방책을 포함한 유의사항들이었다.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사항을 통한 예방책이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분쟁해결대책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쟁발생 이후의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 중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하여 열거함으로써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주지시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 (협상)

협상³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합의에 기초한 교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의사결정과정이고, 양당사자의 의사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협상에서 분쟁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영향

30) 협상은 크게 거래를 위한 협상과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서로의 공동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협상과정은 크게 준비단계, 협상단계, 합의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준비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협상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입장을 따르도록 전략을 취하며, 합의단계에서는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과 여러 가지 장애요인³¹⁾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비밀성이 유지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간이 짧은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협상은 분쟁발생시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3자의 도움없이 분쟁당사자들의 주도하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바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협상을 먼저 시도하여 최대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2. 조정

양당사자가 제3자인 조정인에게 증거 등의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면, 조정인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적절한 조정기법을 이용하면서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돋는 절차로서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 조정인은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

31) 협상자가 협상전략이나 협상기법에 미숙하거나 일방당사자가 입장고수적 전략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난관에 부딪치기 쉽다.

자간의 논의를 촉진시키고 쟁점을 정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정은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³²⁾이 있으나, 일방이 조정안에 불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최종성이 없고, 조정이 성립되어도 강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되어 역시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인이 선정된 후, 조정인이 엄격하게 정해진 형식없이 적합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 중의 진술은 비밀성이 보장되며 이에 따라 녹음이나 회의록작성도 금지된다. 보통 4시간 이내에서 절차가 종결되고 조정인의 다양한 조정기법으로 당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정안을 내놓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별로 특별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건설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으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기구는 PL분쟁조정위원회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실제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확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수입업자들은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상대방도 동의할 만한 홀륭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조정인을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2) 당사자는 스스로 분쟁해결의 결론을 찾는 노력을 함으로써 조정안 동의시 이행율이 높으며,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35-36.) 참조.

3. 중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나 일부를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단심제이고 신속하게 절차가 종결되며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들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이미지 훼손 및 판매에 대한 타격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³³⁾(일명 New York협약)’에 의거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현행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가 아닌 임의중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므로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³⁴⁾에서

33)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의 약자로서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 목적으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외국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불리우며 우리나라에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3년 7월 31일 현재 13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6개 조문으로 구성됨.

34) 중재를 기관중재와 임의중재로 구분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실시하는 중재가 기관중재인데, 1966년에 창설되어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유일한 법정상설중재기관이다. 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제정된 중재규칙(89년, 93년, 96년, 2000년의 총 4회 개정)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99년 150건, 2000년 175건, 2001년 197건, 2002년 210건, 2003년 7월 말 현재 130여건의 중재접수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www.kcab.or.kr)

중재규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에 의한 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수입업자에게는 실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업계나 학계 인사들이 중재인단에 많아 심리 중에 자유롭고 속시원한 발언도 가능할 것이고,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중재의 단점으로는 양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므로 대부분 사전에 계약서상의 별도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을 관례화하는 것이 좋고, 내용이 복잡하고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대리인(변호사)의 선정, 기간의 장기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점이 훨씬 많고 무역과 같이 외국과 거래하는 등 전문성이 많은 분야에서는 분쟁발생시에 중재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므로 수입업자는 계약서작성시 제1절에서 살펴 본 특약조항과 더불어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4. 소송

각급 법원에 의한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해결방식인데, 이것은 해결방식이라기 보다는 분쟁발생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다지 바람직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당사자가 절차에 대해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하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공개주의에 의해 소송사실이 공개되어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쉽다.

그러나 이미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배상요구액의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³⁵⁾

V. 결 론

지금까지 협행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수입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사례를 조사하여 수입업자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술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방어책과 해결책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흐름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예견되므로 legal mind를 배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최고경영자만이 아닌 조직내 전 사원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안전한 제품을 외국 제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 제조업자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예방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일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협상이나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관련자들, 특히 수입업자들은 계약서나 기타 상대방과의 문서 접촉시 중재합의를 하여 놓는 것이 추후에 분쟁발생시 매우 유용하

35)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로서는 최종적인 양보안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 진행의 추이를 보면서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아직 중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중재인들도 중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중재판정결과에 대하여 신속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이 소송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분쟁해결제도들을 제조물책임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하려면 제조물책임법의 고유 목적인 피해자의 보호,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의 해결방법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분야 전문가 양성, 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수입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물의 안전 무결함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나 수입업자 등의 피해구제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분쟁해결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계몽, 홍보를 통하여 높이는 것도 필수사항일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Dispute of Product Liability in Korean Importers

Joon-Young Byun

Sinc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on July 2002,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insured th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Act. Therefore they had to make a special team and organize it to match with the Act. However, some enterprises didn't follow and prepare the team for the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many enterprises had been attacked the PLA and in Japan, as well. but Korea is rare for the PLA. Thus, this is to research the PLA for protecting the disputes.

Upo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ssues and a revision of the PLA. Those are the purpose of my research. In this study, it consists of 5 chapter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mentioned in Chapter 1, and Chapter 2 is for outline of the PLA in Korea. At Chapter 3, the cases are analyzed in the disputes of importers to address important things we have to check. After the analysis, resolution methods in general on import practices are suggested at Chapter 4. Also, this study is summarized at Chapter 5 including further research.

In this research, I find out complex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issues related with PLA. For protecting the issues and disputes, importers should prepare a agreement of arbit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Nothing can be better than prevention on any disputes, but they can be happened sometimes without any intentions or by mistake. Solving these issues, the resolution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the most valuable. The mediation and the negotiation do not force any legal matters. So, the dispute through them does not have a positive res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very low. Du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arbitration is a desirable resolution.

In Korea,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arbitratio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Currently arbitration related with Product Liability has not been followed up promptly because procedures and judgement from a court take for a long time.

In sum,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properly, they should be supported by the arbitration system to concrete essential objectives, so to speak,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arrangements would be required to carry out all the methods above mentioned. Those ar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customers for the dispute resolution.

Key words : Product Liability, importer, arbitration, dispute

참 고 문 헌

- 공길택, “제조물책임법(PL) 대응방법론”, 청문각, 2002.
-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2.
- 김두진,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2002.
-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1999.
- 김상용, “제조물책임법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1994.
-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인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 2000.
- 박기동,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사실추정의 법리”, 비교실무연구회, 박영사, 1999.
- 박희주,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 신광제, 구본천,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동향”,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신인식, “제조물 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1.
- 연기영, “생산물책임의 형성과 입법동향”,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2002.
- 이성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전경련경제조사본부, 2000.

이정세,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6.

정영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연구”, 법률·경영 가이드, 2002.

중소기업청,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2003.

최병록, “제조물책임법의 개요와 이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하종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 인권과 정의, 1994.

허재창, “한국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학지,

2002.

安田總合研究所編, “製造物責任對策”, (株)有斐閣, 1990.

北川俊光, “企業 PL對策”, 日科技連出版社, 1996.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 中央經濟社, 1994.

東京海上研究所編, “製造物責任法大系 I”, 弘文堂, 1998.

東京海上研究所編, “製造物責任法大系 II”, 弘文堂, 1998.

Epstein, “Products Liability: The Search for the Middle Ground”,

N.C.L.Rev, 1978.

Fisher, David A./Powers, Will,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West, 1994.

Holford, “The Limits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Tex.L. Rev, 1973.

Klemme, “The Enterprise Liability Theory of Torts”, U.Colo.L.Rev, 1976.

Noel, “Manufacturer's Liability for Negligence”, Tenn.L.Rev, 1996.

Natural Safety Council, "Product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USA, 1997.

Powers, "The Persistence of Fault in Products Liability", Tex.L.Rev, 1983.

Richard H. Kreindler, "The Arbitration Clause: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n Matters of Product Liability", ASA, 1994.

Schwartz, "Forward: Understanding Products Liability", Calif.L.Rev, 1979.